

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795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6. G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2,449,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H)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6,760,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D(I)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3,659,834원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5,649,600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마. 피고 주식회사 F은 피고 주식회사가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34,874,400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바. 피고 G(J)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1,420,068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과 주식회사 K 사이에 2017. 9. 30.자로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2항, 3항, 4항 기재 각 직불동의서 약정금 계약은 전액을 취소하고, 2017. 10. 11.자로 체결된 제5항의 직불동의서 약정금 계약은 1,420,068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은 소외 K에게 별지 목록 제1항, 2항, 3항, 4항, 5항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7.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5423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9.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K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205,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4774호로 청구금액을 41,927,350원으로 하여 K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순환골재 및 토사 운반비 공사대금채권(이하 위 순환골재 및 토사 운반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12.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2018. 3. 5.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2029호로 K에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53,373,112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8. 7. 26. 인천지방법원 L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7,152,522원을 배당받았다.

4) 원고는 또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7286호로 청구금액을 43,566,786원(원금 41,327,938원 + 위 원금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11. 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783,328원 + 집행비용 455,520원)으로 하여 K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1. 2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직불동의서 작성

1) 피고 B은 K에게 수원M, 안산 N, O 공사현장에서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K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 C(개인사업체 상호: H), D(개인사업체 상호: I),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F, G(개인사업체 상호: J)에게 하도급주었다.

2) ① 2017. 9. 30.자로 ㉠ “수원M, 안산 N, O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K의 기성금 중(운송대금 Q

4,000,000원1), R 7,000,000원2))에 대하여 B에서 Q, R에게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O B현장에서 발생한 K의 기성대금 중(운송대금 F 34,874,400원, P 5,649,600원, (유) S 2,864,000원, G 1,432,000원)에 대하여 B에서 F, P에게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 2장이 작성되어 있고, ㉡ 2017. 10. 11.자로 “안산N 현장 및 B 현장에서 발생한 K의 기성대금 중(운송대금 (유) S 000,000원, G 1,575,200원)에 대하여 B (유)S과 G에게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위 각 직불동의서 3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직불동의서’라 한다).

3)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각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K를 대신하여 피고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게 수원M, 안산 N, O 공사현장에서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기성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추심금소송 제기

원고는 2020. 1.경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1338호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0. 4. 23.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피고 B이 공탁한 53,373,112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B의 위 공탁 상당 공사대금채무도 공탁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B이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추심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2020. 4. 15.을 기준으로 한

추심금 52,449,462원(=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금 41,327,938원 + 집행비용 455,52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20. 4. 15.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10,666,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K는 2019. 9.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한 후 피고 C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직불동의서에 따라 K와 피고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직불동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직불동의약정’이라 한다)은 K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직불동의약정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20. 1.경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1338호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며, 소송물도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위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위 선행사건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직불동의약정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가) 피고 B은 K에 수원M, 안산 N, O 공사현장에서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 C 등은 K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K에게 운반비 등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C 등이 K와 통모하여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각 직불동의약정에 기하여 피고 C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것은 발주자인 피고 B, 수급인 내지 원사업자인 K, 그리고 하수급인인 피고 C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직접 지급 합의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이 피고 C 등이 위 규정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 C 등의 하도급 공사 수행으로 피고 B이 그 이익을 궁극적으로 얻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B이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성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그 경제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C 등은 피고 B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K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형성에 직접 기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이 궁극적인 이익을 얻었으므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K의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피고 B의 K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K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한 피고 C 등과 일반채권자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직불동의약정으로 K의 채권자들 중 피고 C 등이 우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각 직불동의약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 C 등이 K의 전체적, 종합적인 경영 상태를 파악하여 그 재정이 악화된 상황을 명백히 인식한 후 K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직불동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지목록】

직불동의서목록

구분	지급일자	직불업체	직불 동의금액	실 제 직불지급액	사채상회 취소청구금액
1항	2017.09.30.	[]	7,000,000	6,760,104	6,760,104
2항	2017.09.30.	[]	4,000,000	3,654,234	3,654,234
3항	2017.09.30.	(주) [] 변경 후 (주) []	5,049,600	5,649,600	5,649,600
4항	2017.09.30.	(주) []	34,824,400	34,824,400	34,824,400
5항	2017.10.11.	[]	1,575,200	1,575,200	1,503,524
합 계			53,099,200	52,519,138	52,449,462



- 1) 피고 D 관련 내역으로 보인다.
- 2) 피고 C 관련 내역으로 보인다.